**‘시네필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시네필”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본 동아리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영화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적 호기심,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자신만의 영화적인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. 본 동아리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취향의 다양성을 깨달아가며 서로를 존중해주는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으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1학기로 정한다.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의 선출은 희망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기존 임원진 및 집행부의 회의에 의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에 선출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통솔 및 관리∙감독 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, 회장의 부재 시 그 역할을 대리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, 집행부원은 희망하는 사람에 우선으로 고려하여 임원진이 선임할 권한을 갖는다..

② 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

1. 정기모임의 날짜나 장소, 운영방식을 계획하고 진행할 권리

2. 동아리 축제, 학교 축제 등 교내행사에 참여를 결정하고, 그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권리

3. 문화의 날, 전주∙부산 국제영화제 등 교외행사 참여를 결정하고, 그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권리

4. 학사일정의 변동 등에 따라 동아리 활동 일정을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

③ 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학기 당 2회 이상 하여야 한다.

②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.

③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 전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회원의 자격은 현재 숭실대학교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회원은 동아리 활동을 성실히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.

③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회원의 가입 자격은 나이나 학번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② 회원의 가입 방식은 별도의 면접 없이 온라인을 통한 지원서 작성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그 방식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집행부 회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③ 회원의 가입 방식이 전항에 따라 변경될 경우, 그 다음 학기의 회원 모집 시기에 적용된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② 집행부 회의에서 ‘동아리에 부적격한 자’로 결정된 자는 탈퇴가 성립된다.

③ ‘동아리에 부적격한 자’란 동아리 활동의 분위기를 와해하고 갈등을 조성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 4장 회의**

**제 1조 [정기 모임]**

① 정기모임은 학기 중 매주 수요일 18시에 갖는다 단, 학교 측의 공식 시험기간에 포함된 수요일은 정기모임을 갖지 않는다.

② 정기모임의 내용은 교내에서 영화 감상 후 토론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.

③ 학사일정의 변동이나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정기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, 정기모임의 변경 또는 취소는 집행부 회의를 거쳐 정한다.

**제 2조 [총회]**

① 총회는 학기 말에 1회 이상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집행부 회의를 통해 총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, 그 시기에 관계 없이 총회를 열 수 있다.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집행부가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동아리의 활동비가 되는 회비 외에도 일정한 금액의 활동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 3조 [활동보증금]**

① 본 동아리는 회원들의 꾸준한 참여를 장려하고 이것을 통한 동아리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.

② 활동보증금은 10,000원으로 정한다.

③ 활동보증금의 환급은 정기모임의 3분의 1 이상 참여 시 이루어진다.

④ 정기모임이라 함은 매주 수요일 18시에 진행되는 정기모임을 말한다.

**제 4조 [결산보고]**

① 학기의 마지막에, 임원진 및 집행부원 중 1인이 대표하여 한 학기 회비의 결산을 문서 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. 동아리 내 모든 회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면 그 게시의 방식에 따로 정함을 두지 않는다.

**제 6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7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0.03.31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